

## 충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2.22.]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정치외교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이수하였던 과목 중, 석사학위과정은 전공과목 2개와 다른 전공과목 1개에 응시하고, 박사학위과정은 전공과목 3개와 다른 전공과목 1개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 학생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EPS 572점 이상
  2. TOEIC 700점 이상
  3. TOEFL(CBT) 217점 이상
  4. TOEFL(iBT) 82점 이상
  5. TOEFL(PBT) 553점 이상
  6.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논문연구계획 발표)** ① 논문연구계획 발표는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 학생 모두 3명의 심사위원으로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를 받은 후, 한 학기 전에 실시한다. 논문계획 발표과정에는 전임교수 모두 참석하며, 합격과 불합격의 판결은 지도위원회위원만 권한을 갖는다.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 박사학위과정은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공저를 포함하여 1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공저의 경우 주저자일 경우에 한한다. 단, 외국인 학생의 경우 기타학술지도 인정한다.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9조 (응시절차)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한)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정해진 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출제기준)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1조(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①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은 해당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학과장이 위촉한다.

제12조(합격기준)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논문제출자격시험은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